

# 微生物寄託 및 生物工學發明의 特

## 寄託의 必要性 및 日本에서의 寄託시스

〈前號에서 계속〉

### 라. 自然에서 분리한 경우 또는

#### 突然變異시킨 경우의 微生物

發明에서 使用한 微生物이 自然으로부터 分리하는 경우 그 微生物을 함유하는 시료를 채취한 자리적인 위치와 그 微生物의 分리방법에 관한 명료한 記述說明이 明細書에 記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同一한 자리적 위치로부터 동일한 분리방법으로同一한 微生物을 분리해 낸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微生物이 우연한 突然變異 方法으로生成된 미생물인 경우同一한 突然變異 方法에 의한同一한 微生物의 製造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에 의해 그 발명의 再現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同一한 微生物의 製造가 반복 재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寄託機關에 製造된 微生物을 寄託하여 일반적으로 하여금入手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要求된다.

일반적으로 토양·온천 또는 하천 등과 같은 自然으로부터 微生物을 분리할 경우同一한 장소에서同一한 시료를 채취하여同一한 方法으로 제3者가目的하는 微生物을 分리하는 것이現在의 技術수준으로는 반복 재현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同一한 토양이나 온천이라 하더라도 기온·습도·유해물질 등과 같은 外部환경요인에 의해 특정 微生物이 사멸될 수도 있고 成長力이 더 강한 다른 微生物 군락에 의해目的하는 微生物 군락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외부 환경요인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한주먹 양 만큼의 토양시료 속에는 수백 내지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微生物 군락들이 함께 존재해 있기 때문에同一한 分리방법으로 잘 분리한다 하더라도 한 두번으로는 목적하는同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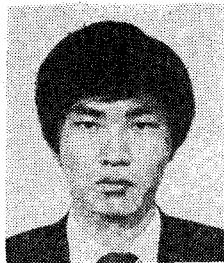
微生物이 분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들연변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자외선(U.V)이나 化學物質(N.T.G, 5-Bromouracil, 2-Aminopuine) 등을 使用하는데, UV를 使用해서 微生物을 突然變異시킬 경우 變異되는 반응기구를 살펴보면 微生物의 핵내에 있는 DNA 사슬의 불특정부위에存在하는 티민염기(T)와 티민염기가結合되어 티민 다이머(Thymine Dimer)가 티민염기들이 인접해 있는 DNA 사슬상의 부위면 아무래나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 티민염기 다이머가 DNA 복제시에 발생되는 재조합 과정에서 재조합의 실수를 일으키게 하여 새로운 염기쌍으로 變異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DNA 서열을 갖는 微生物이 생겨나게 된다. 이 경우 티민 다이머가生成되는 부위가 다른수록 전체적인 DNA 서열이 달라져 결국 다른 遺傳子 기능을 하는 DNA가生成되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DNA 서열이生成되어 서로 다른 遺傳子 기능을 갖는 微生物이 될 경우의 수는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5-브로모우라실(5-Biomouracl)과 같은 突然變異를 유발시키는 化學物質을 사용하여 들연변이시킬 경우도 5-브로모우라실이 시토신(C)염기(혹은 티민(T)염기)를 대신해서 DNA 사슬상의 구아닌(G)염기(혹은 아데닌(A)염기)와 결합하므로써 DNA 사슬의 복제시에 이들 5-브로모우라실이 토로메리제이션을 일으켜 엔올(Enol Form)이 케토(Keto Form)으로 케토가 엔올로 되면서 각각 구아닌-5-브로모우라실은 아데닌-티민염기쌍으로 변이되고 아데닌-5-브로모우라실은 구아닌-시토신염기쌍으로 변이되어 全體의 인 DNA 서열이 變化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자외선을 사용하여 티민다이머가生成되는 경우처럼 DNA 사슬의 불특정 부위에서 이들 化學物質인 5-브로모우라실이 각각의 염기와 결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DNA

# 特許(3)

## тем 中心



朴炳錫

〈特許廳 審查官〉

서열을 갖는 DNA로 복제되어生成될 경우의 수가 무한정으로 많다. 왜냐하면 DNA 사슬은 아데닌(A), 구아닌(G), 티민(T), 시토신(C)의 4개의 염기가 중복순열로 결합되어 있는 종합체이므로 이들중 하나의 염기쌍이變異되어도 전체적인 DNA 서열이 달라져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DNA 서열이 될 경우의 DNA 형태는 DNA의 각 염기의 수에 대한 중복순열의 수만큼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외선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突然變異시킬 경우 이로부터生成되는微生物의 遺傳子形(Gonotype)이 상이한微生物이 제조되고 이로 인해 표현형(Phenotype)이 상이한 경우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되어, 化學物質·UV 등의 처리시간·처리강도·처리빈도수 등의 돌연변이 조건을 아무리明細書에記載한다 하더라도同一한微生物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突然變異된微生物의寄託을要求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II. 發明의 開示 (Disclosure of the Invention)

特許制度는 出願人에게 일정기간 동안 당해發明을 實施할 수 있는 득점권 또는 배타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소정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發明을 일반 대중이 자유로이利用할 수 있도록發明의內容과 實施方法 등에對해 완전하고도 충분한公開를 해야 할義務를出願人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주지된事實이다. 따라서 特許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國家의 特許法에서는發明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가능하도록 충분한開示(Disclosure)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生物工學 관련發明에서는 전통적으로 기계장치와 같이 서면으로 된明細書에 실시가능하도록 완전한發明의開示

## 論壇角言說

### 目次

- I. 머리말
- II. 寄託 制度
- III. 發明의 開示
- IV. 生物工學 發明의 特許性
- V. 特許戰略
- VI. 맷는말

〈고딕은 0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書面主義의例外 또는 明細書記載의 보완수단으로微生物 또는 그관련물질의寄託을 特許出願明細書제출과 함께義務化한 것이다.

#### 1. 發明의 開示要件에 따른 微生物 寄託의 法的根據

##### 가. 유럽特許廳

유럽特許法 제83조(Disclosure of the Invention)는 「유럽特許出願은 당해 技術分野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實施되기에 충분히 명료하고 完全한 方式으로 그發明을 開示(Disclosure)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特許法施行規則 第28條(미생물 관련 유럽特許出願要件)에서는 「發明이 微生物學的方法 또는 그產物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에게入手可能하지 않은微生物의 使用을 포함하고 유럽특허출원서에 당해분야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實施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發明은 다음 요건 「즉 特許出願日以前에 승인된 微生物 寄託機關에 微生物을 寄託하고 당해 微生物의特性에 對해서 出願인이 알고 있는 관련정보를記載하고, 기타기관 및 기타번호가 出願書에 기재되어야 함」을 만족하면 유럽特許法 第83條(發明의 開示)에 따른 開示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微生物의寄託을義務화하고 있다.

##### 나. 英 國

英國特許法 第14條(特許出願) 第3項에서도 「特許出願明細書는 그發明이 그技術分野 통상인에 의해 實施하기에 충분하도록 명료하고 완전한 표시로 開示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同條 第4項에서 「微生物을 使用하는 特許出願明細書의 경우 제3항의 기재조건은 特許規則 제17조에 의한다」고 明示되어 있으며,

特許規則第17條(寄託)에서는 「特許法 第14(3)條에 규정한 特許出願의 明細書 要件에 부합되며, 特許出願일 당시에 일반인이入手할 수 없는 微生物을 利用한 發明의 特許出願書의 開示는 다음 요건 「즉 出願日 보다 늦지 않게 기탁기관에 微生物을 기탁하고 微生物의 特性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고 기탁기관 및 기탁번호·寄託日의 出願書 記載」에 의해서 그 기술분야 통상인에 의해 實施하기에 충분하도록 명료하고 완전한 표시로 취급된다」고 規定하고 있어 유럽 特許法과 실질적으로同一한 微生物 寄託規定을 갖고 있다.

#### 다. 美 國

美國의 特許法 第112條(明細書) 第1項은 「明細書는 그 發明을 製造하고 使用하는 方式과 方法의 상세한 설명을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 또는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技術分野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同一하게 製造하고 使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기재한 書面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MPEP 608.01(P)C에서는 「微生物이 公知되지 아니했고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는 경우 이 微生物을 使用한 發明을 特許出願하는 경우 出願人은 發明을 實施하기 위해 要求되는 微生物의 적절한 開示를 위한 特許法 제112조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微生物의 寄託 및 特許허여후의 미생물의 분양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주요국과 美國의 경우 微生物의 寄託은 그 發明을 實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開示를 위해 寄託을 하는 것으로 그 法의 根據를 명료히 하고 있다.

#### 라. 日 本

일본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유럽과 美國의 경우처럼 微生物 寄託과 관련한 特許法 條文을 명확히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特許法 施行規則 第27條의 2에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한 特許出願을 하거나 하는 著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그 微生物을 容易하게入手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微生物을 승인된 寄託機關에 기탁하고 出願書에 기탁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도록」하고 있다.

参考的으로 日本 特許廳에서 작성된 「유럽·美國 및 日本 特許廳間의 特許實務의 造成를 위한 프로젝트 중 微生物 發明에 관련된 特許實務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特許出願 明細書의 적절한 開示」에서 「실시가능성의 要件으로 發明은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明細書는 日本 特許法 第36條(特許出願) 第3項에서 보듯이 「發明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는 通常의 지식을 가진 著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정도로 그 發明의 目的·構成 및 效果를 記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정도로」는 出願當時의 技術수준에서 再現 가능하도록 당해 發明을 製造 또는 使用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는 微生物에 對해 그 寄託을 說明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微生物 寄託에 관한 根據法條文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特許法 第36條(特許出願) 第3項에 根據하여 微生物의 寄託을 義務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世界的으로 微生物의 寄託은 特許出願 明細書의 完全한 開示要件에 부합하기 위한 法의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美國에 있어서 明細書의 開示와 이에 적합한 明細書 開示를 한 예에 관해 I.P. 쿠퍼氏의 生物工學 發明의 개시요건에서 주요내용을 말해하여 살펴보자 한다.

#### 2. 美國에서의 生物工學 發明의 開示

美國特許法 第112條(明細書)의 第1項은 明細書 記載와 관련된 發明의 開示要件(Disclosure Requirement)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3가지의 구체적인 要件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記載要件(Description Requirement), 實施可能性的 要件(Enablement Requirement) 및 最善의 實施方式 要件(Best Mode Requirement)을 말한다.

이와 같이 發明을 開示하는 要件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생소하게 생각되지만 우리 特許法 第8條 第3項의 明細書 記載要件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生物工學 發明의 特許소송에 있어서 發明의 開示와 청구범위의 넓은 정도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출원의 對象이 복잡한 技術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生物工學의 특정분야에 따라 예측불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 구조적 또는 화학적 특성들에 의해 對象은 定義하는 것 및 균등물의 적절한 범위를 定義하는 것 등이 종종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 가. 記載要件(Description Requirement)

###### 1) 부적절한 記載의 例

特許出願인이 明細書에는 그의 發明을 구성요소 A와 B의 結合으로 기재하고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A, B, C 및 D의 결합으로請求했을 때 이明細書는 당해發明을 적절히記載하지 못한 것이 된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明細書에는 구성요소 A, B, C 및 D가 기재되고 이들의 결합으로 특정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發明이記載되고,請求範圍은 구성요소 A B C가 청구되었을 때明細書記載가 잘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請求되는發明에對해 당해明細書에 반드시 그發明의記載가必要한 것이다.

## 2) 記載要件(Description Requirement)과 實施可能性의 要件(Enablement Requirement)과의 구분

예를 들어 클로르프로팜미드(Chlorpropamide)가 속하는 치료제 化合物群의 製造方法이 出願明細書에 記載되어 있고 청구범위에는 클로르프로팜미드 化合物自體는請求되지 않고 치료제 化合物群으로만請求되어 있는 경우에, 나중에出願인이 클로르프로팜미드를 특정하여請求했을 때 명세서가 同 化合物群이 속하는 치료제 化合物群을 製造하는 方法이明細書에 記載되어 있어서 上記한 化合物을 製造할 수 있다(즉 實施可能性要件은明細書가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최초明細書에 同 化合物에對해 구체적으로 記載하고 있지 않으므로特許가 인정되지 아니했다(Ruschig 37q, F. 2e, 990 참조). 이와같이記載要件과 實施可能性의 要件이 구분되어, 生物工學 관련發明에서請求하는 주체는 반드시明細書에 그 요지 및 주체에對해記載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記載要件의 기능은出願인이 나중에 청구한 발명(주제)을出願當時에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증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기재요건은發明의 주제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계분야에서는넓은 청구범위에對한 기재要件을충족시키기 위한記載는 적게 요구되나,化學이나微生物 분야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記載要件을충족시키기 위해 기재가 많은量이要求된다.

微生物 분야의 기재는發明이 신규한生物學의 物質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記載要件은 정상적인化學實務와同一하게 된다.

### 나. 實施可能性의 要件 (Enablement Requirement)

#### 1) 實시가능성의 要件과 기재요건(및 최신의 實시방식 要件) 사이의 차이

실시가능성의 要件은 당해기술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發明을製造하고 使用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實施할 수 있도록發明을記載하도록要求하는 것이다.

이요건이기재요건 및 최신의 實시방식요건과 다른점은 實施可能性의 要件이出願書에의해서 實시 가능성의 要건이 만족되어진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하여出願書에開示된 것 이외의 外部資料에 의존하는것을 허락하고 있으나,記載要件과最善의 實施方式要件은出願書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根據로하여半斷되어야 한다는점이다.

그래서 實施可能性의 要件를 만족시키기 위해서出願書에開示된 것 이외의 많은外部의in事實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면 당해기술분야의 지식과기술의 수준 및 그發明과관련된 분야기술의 예측 가능성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등의外部의in요소를 고려하여 實施 possibility를판단하게된다. 일반적으로 實시가능성의 要건을만족하기 위해필요한開示의量은 예측 가능성과당해분야기술수준에반비례하게된다.

#### 2) 實施可能性의 要件과 微生物의 寄託

일반적으로生物學의發明의 복잡성때문에이를發明은明細書記載(Description) 단독으로 예측가능한 반복 재현성을 인정할정도로 충분히記載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재조합DNA에使用된技術들조차도 일정치 않은일들이최종산물의정확한성질을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을일으키게 할수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는美國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特許出願人으로하여금 미생물 또는 복제성 있는생명물질을寄託機關에기탁하도록 허락함에 의해해소되어져왔다. 따라서微生物의寄託은微生物을記載(Description)만으로 충분히明細書에開示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實시가능성의 要건에부합하기 위해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Ex Parte Formam事件에서도 미생물을寄託을 아니했다는거절을發明의 實施可能性의 要건에根據하고 있음을보았다. 또한Lundak事件에서도Lundak의個人실험실에의微生物이寄託이독립된寄託機關에의기탁을하지않은이유로 實施可能性의 要件에부합하는가에관한문제를정착시키는동안에記載(Written Description)의完全性은인정되었었다.

따라서이사건에서法院은特許法第112條第1項을記載要件(Descripton Requirement)과 實施可能性의 要件(Enablement Requirement) 사이를구분했음을볼수있다.

〈계속〉